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농업경제위원회

1998. 8. 26.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8년 8월 18일
- 회부일자 : 1998년 8월 18일

다. 상정 일자 : 제151회 임시회

-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1998. 8. 26)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공업경제국장 김 만 기)

가. 제안 이유

-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 시행이 되면서 본 조례의 주요기능인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쇼핑센터)의 개설 허가가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시장,백화점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 됨으로서, 본 조례의 존치 목적이 상실 되었기에 폐지코자 함.

나. 주요 골자

- 충청북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영 웅)

본 폐지 조례안은,

지난 1987년 10월 23일 제정되어, 그 동안 지역별 도·소매업 진흥 계획수립, 대규모소매점(백화점, 쇼핑센터) 도메센터의 개설허가, 도·소매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등의 판매활동에 대한 권고 및 명령, 기타 도·소매업의 진흥과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였으나,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도·소매업 진흥법이 1997년 7월 1일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 허가가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 권고, 시정명령, 청문 보고조사 등의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됨으로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것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위와 같이 상위법인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어 이 조례의 존치 목적이 상실 되었음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9. 별 첨

·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부